

[별표 5] <개정 2008.2.29>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283조제2항관련)

면허의 종류	면 허 시 험 의 응 시 자 격
1. 원자로조종 감독자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후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에서 동일 기종에 관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2. 원자로조종 사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1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6월) 이상 종사한 자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2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1년6월) 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에서 동일 기종에 관한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종사한 자

	나.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받은 후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에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6월) 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에서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가진 자 나.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7.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자 라.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